======= 【 기술보호와 법 】 ======== <<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이해 >>

I.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1. 소송

- 소송은 재판절차를 모두 밟는 정식절차와 그렇지 않은 간이절차로 나뉜다.
- 간이절차는 간단하고 편의적인 재판절차로 형사소송의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민사소 송의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 등을 들 수 있다.

(1) 정식절차

- 민사소송의 정식재판절차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 및 소송의 목적과 근거 등이 기재된 소장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재판이 개시되고, 공개 법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변론절차를 거쳐 법원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마무리된다.
- 형사소송에서는 정식재판절차를 '공판절차'라고 부른다. 이 경우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 죄명,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그에 적용할 법조항 등을 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써 재판이 시작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종결된다.
- 정식절차는 재판의 기본이 되는 방식이다. 정식절차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진실을 찾고 진정한 권리자를 가리는 가장 좋은 형태이다.

(2) 간이절차

1) 약식절차

-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법원에 불러 심리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사가 벌금 등의 형을 내리는 절차이다. 약식절차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의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즉결심판

-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이다. 즉결심판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 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결심판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3) 소액사건심판절차

- 소송 목적물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 빠른 진행을 위해 심리는 한번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

(1) 협상

-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알선

- 제3자가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자가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재/조정과 구분된다.

(3) 중재

- 당사자끼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제3자가 중재안을 내놓는 것을 중재라고 한다.
- 중재는 사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법원이 아닌 중재위원회 등 다른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경우도 많다.
- 국제거래에서의 중재, 상거래에서 중재, 노사분규의 중재 등 다양한 예가 있다.

(4) 조정

-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 중재와 다른 것은 제3자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 예. 민사조정제도, 가사조정제도가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이해 >>

I. 개인정보보호는 무엇인가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1) 개인정보의 의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아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 이름 + 전화번호, 이름 + 주소,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종류

- 일반적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통신 위치 정보 : 통화기록, IP주소, GPS 등

- 사회적 정보 : 교육정보, 근로정보, 자격정보

- 정신적 정보 : 기호, 성형, 신념, 사상

- 신체적 정보 : 신체정보, 의료정보, 건강정보

- 재산적 정보 : 개인의 신용정보, 부동산, 주식 등

(일상에서의 개인정보)

- 출근: 교통카드, CCTV --> 이름, 계좌, 카드번호, 영상
-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 --> ID, PW, 사진, 동영상, 빅데이터
- 사무실 출입 : 전자카드 --> 이름, 사번
- 업무 --> 이름, 계좌, 카드번호, 영상, 이메일, 전화번호
- 점심식사 :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카드 --> 이름, 각 카드번호, 연락처, 위치정보
- 온라인쇼핑 --> ID, 신용카드정보, 주소, 연락처
- 병원진료 --> 건강보험정보, 이름, 병명, 진료기관
- 친목모임 --> 이름, 연락처, 학교정보, 전공, 졸업년도

====== 【 기술보호와 법 】 =======

2. 개인정보의 요건

(1) 살아있는

- 생명이 있는 것을 의미
- 생명이 없는 사물이나 법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2) 개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특정 개인과 연관이 되는 정보
-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보다는 특정 사물이나 대상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정보이므로 1차적으로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보의 특성상 특정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 날씨, 각종 기기의 제원 등은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

(3)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 1)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학번, 사번 등은 특정 개인에게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 성명, 주소와 같은 정보는 동명이인이 있고 같은 주소지에 여러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그러나 성명과 주소가 결합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므로 이들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된다.
- -->정보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 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례) 휴대폰은 위치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위치정보 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하기 어려우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휴대폰은 특정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특정 개인과 밀접한 연 관성이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거나 주변의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는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각종 재난 신고나 구조활동에도 위치정보가 이용되고 있다. --> 위치정보는 휴대폰 이용자의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된다.

2)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 통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 예. 주민등록번호의 14자리 숫자는 누구의 주민번호인지 추측할 수 있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숫자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회원가입이나 통장개설 등 사회활동은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이 번호가 누구의 번호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3. 개인정보의 특징

- (1)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제한 없음
- 디지털 형태나 수기 형태, 자동처리나 수동처리 등 그 형태나 처리방식과는 무관하게 판단한다.
-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에 관한 정보,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정보도 개인정보이다.
- (2)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 다른 정보 없이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 Q.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 숫자가 개인정보일까?
- A.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뒷자리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전화번호, 가족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대전지법논산지원 2013고단17판결)

[사례] 자동차 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와 결합하면 등록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입출차시간과 결합하게 되면 특정 개인이 특정 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개인정보보호의 효과

(1)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 【 기술보호와 법 】 =======

- 개인 : 정신적 피해 및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전적 손해,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 에 노출 우려 등

- 기업 :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의 대상, 다수 피해자에 의한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금전적 손실 등
- 국가 : 정보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국가 이미지 하락 등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 이용, 공개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 체가 스스로 통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3)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분야의 일반법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의료법 등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적용하여 판단 (특별법우선의 원칙)

Ⅱ.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는 무엇인가

1.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 (1)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 필요최소한의 수집
- 1) 처리 목적의 명확화
-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에 기재
-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OO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OO회원가입을 위하여"와 같이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2) 필요 최소한 수집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정해졌으면 개인정보 수집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수집하여야 한다. -->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원칙'
- 예. 3개의 포털이 있다고 할 때 타사보다 정보를 더 요구할 때에는 왜 수집하여야 하는지 를 증명해주어야 할 것

======= 【 기술보호와 법 】 ========

- (2)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외 활용금지
- 적법하게 :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신청, 신고, 인·허가,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지켜야 한다는 의미
- 개인정보는 그 처리목적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 당초 설정한 처리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3) 처리목적 내에서 정확성·최신성·완전성 보장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한 제품을 발송하여야 하는데 주소나 연락처가 잘못되어 있다면 제품발송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고객의 주소가 일부만 기재되어 있거나 이름이 누락되어 있다면 배송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회원의 개인정보는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회원의 주소지가 과거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다면 구매한 제품은 과거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주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될 것이다.
- (4)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속의 차단이나 개인정보 취급자들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등은 지속적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
- (5)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는 것, '정보 통신망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이메일로 안내
-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그리고 파기에 대한 요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쉽도록 요구절차를 개인정 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즉시 응해야 한다.
- (6)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고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기술보호와 법 】 =======

- 개인정보 중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 --> 민감정보 (예.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보주체의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나 개인의 고민 상담 내역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행위)

(7) 익명처리의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를 식별하지 않더라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화하여 처리
- (8)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신뢰 확보 노력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2.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 결정할 권리
- 처리 개인정보의 처리여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치,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 Q. 학원에서 수강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지역, 출신학교, 휴대전화번호 등을 적으라고 하는 것이 과도한 수집인가?
- A. 학원은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법령에 따라 수강생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수강생대장에는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원등록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되어 있다. 그 외 성별, 지역, 출신학교는 법령에서 정한 항목이 아니므로 반드시 필요한정보가 아니라면 수집하면 안된다.